

2023년 제2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5. 1.
경기도지사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3.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관할 시·군에 동 사실을 통보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구분	최대지원기간	연간 지원한도금액	최대 지원한도금액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인증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1억원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3억원 미만 한도
 -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판로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 경쟁력 제고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 (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각 구성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기초자치단체 제출 [붙임 제2호서식]
 - 각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관계 서류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공유
- (지원한도)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업의 개별 실적과 운영체 취합 실적을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사업 정산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 사업포기 등으로 운영체가 해체되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5. 지원기간 : 2023. 8월 ~ 12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은 참여제외
-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6.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자부담은 회차별 건별로 산정)
- * (예시) 회차별 자부담 적용 표(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 예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A기업	10%	20%	30%	30%	30%	30%
B기업	10%	미참여	20%	30%	30%	미참여
C기업	10%	미참여	20%	미참여	30%	미참여

- * (예시) (2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참여기업 자부담 (2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8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6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4백만원)		

7. 사업개발비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사용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 하되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 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시장군수 및 경기도지사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II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 실사 후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미비 시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제외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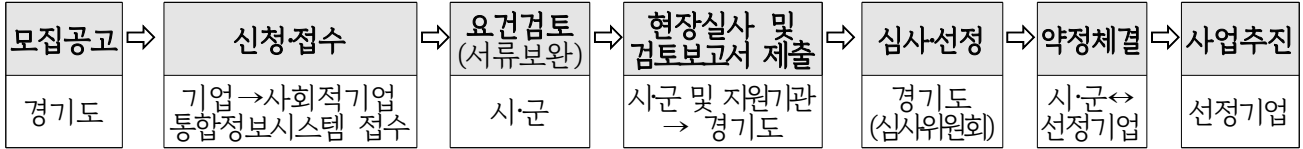
○ 심사방법 : 대면심사,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별표 심사기준 참조]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3.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금액을 배정(단, 60점 이하 선정 제외)

4. 선정절차



5. 참여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신청한 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 신청은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신청 되지 않도록 유의

7. 선정결과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2023. 7월말 예정)

Ⅲ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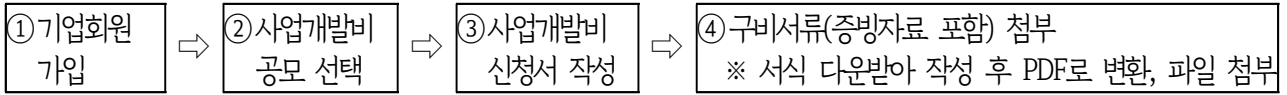
1. 신청기간 : '23. 5. 1.(월) ~ 5. 15.(월) 18:00까지 <15일간>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인하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접속 장애로 인한 신청접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3. 5. 16.(화) ~ 5. 24.(수) 23:59
 -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3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 및 브랜드 사업지원 신청 시,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IV 제출서류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각 항목별 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합본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내용 순서	서식
① 사업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또는 [붙임 제2호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붙임 제3호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비교견적서 미첨부시 불인정 - 과거 사업개발비 보조금 최종 실적보고서 ※ 기업별 가장 최근 2년간 자료 작성, 지원이력이 없는 경우 미작성	[붙임 제4호서식] [붙임 제4호의2서식] [붙임 제4호의3서식]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㉓, ㉔ 중 택1) - ㉓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 과정’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하여 유효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만)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 신청기업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서식]
⑩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관련 각 지표별(4개)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붙임 제6호서식]
⑪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최대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20.1.1. 이후 설립된 기업의 최근3년('20년, '21년, '22년) 자료 자동 업로드가 안된 경우 수기 업로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V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2023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도 및 시·군)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457
수원시	마을자치과	031-228-2354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5011
용인시	민생경제과	031-324-2228	군포시	자치분권과	031-390-0940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3663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082-6091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5189-3107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97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044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590-8906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5454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609	의왕시	자치행정과	031-345-2397
평택시	미래전략과	031-8024-3526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4428
안양시	고용노동과	031-8045-2945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37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287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	031-980-2746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파주시	도시재생과	031-940-5071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462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031-828-2373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031-580-295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2672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286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